1. 일반

1.1 본 판매 일반조건(이하 "약관"이라 함)은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 회관 9 층 (07320)에 소재한 (주)디에스엠뉴크리션코리아(이하 "DSM"이라 함)가 고객에 대하여 DSM 의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이하 총체적으로 "제품(들)"이라 함)의 제공, 판매, 인도 및 기타 DSM 과 고객간의 일체의 거래에 적용된다.

1.2 본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거래에 약관이 적용됨에 동의한다.

1.3 DSM 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약관의 적용을 명백히 거부한다. 또한, 본 약관은 제품의 판매 및 인도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 구두 및 서면을 통한 의사교환, 합의 및 양해 등의 일체의 조건에 우선하며, 고객의 주문 또는 제출한 일체의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DSM 은 고객이 정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고객의 조건에 합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또한 DSM 이 이행에 착수 또는 인도하더라도 고객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약관이 고객의 조건과 상이할 경우, 주문서의 확인과 제품의 인도를 포함한, 본 약관 및 DSM 에 의한 또는 DSM 을 대신하여 실시된 이후의 의사교환 또는 행위는 대안(counter-offer)으로 간주될 뿐, 고객이 제안한 조건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DSM 에 의한 제품 인도의 동의를 확인하는 고객의 의사교환 뿐만 아니라 고객이 DSM 으로부터 제품 인도 수락은 고객이 본 약관에 절대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1.4 본 약관의 최신판은 www.dsm-nutritionalproduct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DSM 은 언제든지 본 약관을 수정할 권리를 갖는다.

DSM 은 수정된 약관을 고객에게 송부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통해 그러한 수정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다. 수정된 약관은 이러한 수정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수정된 약관은 그러한 통보일 이후 고객과 DSM 간에 맺은 일체의 거래사실에 적용된다.

1.5 DSM 과 고객간의 어떠한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원본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계약 당사자들간에 "서면행위"로 간주된다. DSM 이 사용한 전자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그러한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전달, 고객의 수령 시점 및 그 내용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된다.

2. 견적서, 주문서 및 확인서

2.1 DSM 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DSM 이 작성한 견적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DSM 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단지 고객이 주문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DSM 이 발행한 모든 견적서는 취소 가능하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주문서는 DSM 이 서면으로 승인할 때까지(이하 "주문 확인서"라 함)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DSM 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주문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2.2 예측 또는 안출된 수량에 기초한 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실 구매량이 예측 또는 예상된 수량보다 적을 경우 가격인상의 대상이 된다.

2.3 각각의 납품은 별도의 거래로 간주되며, 납품 불이행은 다른 납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 가격

3.1 DSM 제품의 가격과 통화는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것과 같다.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DSM 의 가격은 표준 포장을 포함하되 제품 또는 그 인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관할 과세당국에서 부과된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 관세, 징수액 또는 과금 등(이하 "세금"이라 함)은 제외한다.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과된 세금은 고객의 계정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각각의 송장에 추가되거나 또는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 한다. DSM 이 할인을 제공하게 될 경우, 이러한 할인은 오로지 주문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인도에만 해당된다.

3.2 DSM 이 주문 확인서상에 가격이 확정적인 것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원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인상 되었을 때, DSM 은 인도 되어야 할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원부재료, 에너지, 제 3 자로부터 DSM 이 획득한 제품, 임금, 봉급, 사회보장부담금, 정부 과세금, 화물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SM 은 합리적이면서, 결정적 비용 요인들의 증가분을 초과 하지 않는 인상액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대금지급 및 고객의 신용

4.1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대금지급은 DSM 의 송장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DSM 이 수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명백한 집행 가능한 반소로 인한 상계청구를 제외하고, 모든 대금지급은 세금을 포함하며 반소로 인한 상계청구로 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송금에 소요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4.2 제품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기간을 엄수하는 것이다. DSM 은, DSM 의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일체의 미결제 금액이 완불될 때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 (합당한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법원 비용 및 기타 소송 경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와 관련하여 DSM 이 지출한 일체의 비용과 경비는 고객이 지불 책임이 있다.

4.3 고객의 대금지급은 최우선적으로 재판 및 재판 외 비용과 경과 이자를 충당하며, 이후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가장 오래된 채권순으로 공제된다.

4.4 고객은 송장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송장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으로 DSM 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 후 고객은 그 송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인도 및 수락

5.1 주문 확인서에 달리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 제품의 일체의 인도는 CIP. (지정목적지 운임지급 인도조건) 조건으로 한다. CIP 조건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코텀즈(INCOTERMS)의 최신 버전에서 정의된 의미로 해석한다. (www.iccwbo.org/incoterms 참조).

5.2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DSM 에 의한 인도 시간 또는 날짜는 추정치이며 계약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DSM 은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제품의 일부를 인도하고 별도의 송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 고객이 그러한 인도의 지연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을 경우, 고객은 인도 지연을 이유로 제품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고객은 제품을 인수하고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인도된 수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6. 계약 취소

6.1 고객이 제품을 부당하게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주문 확인서를 취소할 경우, DSM 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실뿐만 아니라 아래 언급된 추가 손실에 대해 고객으로 보상받을 권한을 갖는다:

(i) DSM 이 제 3 자에게 합당하게 재판매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제품의 가격; 또는

(ii) DSM 이 재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약정 손해 배상금으로서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제품 가격의 50%에 상응하는 금액

7. 사양의 검사 및 준수

7.1 제품의 인도시 그리고 제품의 취급, 사용, 혼합, 변경, 통합, 가공, 운송, 보관, 수입 및 (재)판매하는(이하 "사용"이라 함) 동안, 고객은 제품을 검사 하여 인도된 제품이 주문 확인서에 의하여 명시된 제품 사양과 일치함 또는 합의된 사양이 없을 경우에는 제품 인도시 DSM 이 사용한 가장 최근의 사양(이하 "사양"이라 함)과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7.2 고객은 (I) 인도 시점의 상당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명백한 하자, 태만 또는 함량 부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불만은 인도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그리고 (II) 명백한 추가 클레임(예; 숨겨진 결함)에 대한 불만은 그것이 확인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DSM 에게 전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i) 제품 인도일로부터 6 개월이 종료되는 날 또는 (ii) 제품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인도된 제품의 사용은 인도일 이후 제품에 대한 무조건적 수락 및 제품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의 포기로 간주한다.

7.3 인도된 제품이 사양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DSM 의 분석방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된 일군 또는 생산 과정으로부터 추출된 DSM 이 보유하고 있는 샘플 또는 기록을 분석하여 DSM 이 단독으로 실시 한다. DSM 이 고객에게 공급한 제품의 일군 또는 생산과정의 품질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DSM 은 해당 일군 또는 생산과정이 사양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술한 일군 또는 생산과정의 표본 샘플을 고객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독립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분석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며, 분석 결과와 다른 의견을 주장한 당사자는 그 독립된 검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검사에 수반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4 고객이 제품의 하자 없는 부분의 일부 인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고객은 제품 일부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 전부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어떠한 고객 불만도 제 4 조에 명시된 고객의 대금지급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8. 위험 및 소유권의 이전

8.1 제품의 위험은 적용 가능한 Incoterm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되어야 한다(5.1 항 참조).

8.2 DSM 이 이자, 수수료, 경비 등의 비용을 전부 수령할 때까지 제품에 대한 권리와 이에 따른 완전한 법적 및 수익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DSM 이 보유한다.

8.3 제 16 조에 의한 계약 종료의 경우, DSM 은 DSM 이 보유한 다른 권리의 침해 없이, 제품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재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9. 보증의 제한

9.1 DSM 은 인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품이 제품 사양을 준수함을 보증한다. 제품이 이러한 보증을 위반할 경우, 제 7 조에 따라, DSM 은 상당 기간 내에 고객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임의적으로 선택하거나 제품의 원송장 금액으로 대변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DSM 의 의무는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제품의 대한 신용상환으로만 한정된다.

9.2 DSM 의 수리, 교체 또는 신용상환 의무는 제품이 사양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DSM 이 기한 내에 수령하고, 그리고 적용 가능할 경우, 제 7 조에 따라 제품의 반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9.3 전술한 보증은 배타적이며, 상품성, 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부합성에 관한 보증과 또는 제품에 관한 지적재산권상 청구권 침해의 부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법 또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여타 모든 보증, 진술, 조건 등을 대체한다.

10. 한정 책임

10.1 제품 및 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에 관한 DSM 의 책임은, 발생 건당, 고객의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한정되며,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고객에게 인도된 하자 제품의 판매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10.2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조건하에서든, 보증 위반, 계약 위반, 허위 진술, 태만 등으로 인한 발생 또는 관련성 존재에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권 상실, 매출 또는 이익 상실, 납기 지연, 작업 중단, 생산 실패, 기타 상품의 감손 등에 기인하거나 기타 원인에 기인한 손해를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고, 특수적, 우발적,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 내지 손실, 비용 또는 경비 등에 대해, 상대방 또는 기타 개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불가항력

11.1 양 계약 당사자는 천재지변, 법규정, 행정적 조치,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지진, 홍수, 화재, 폭발, 전쟁, 테러, 폭동, 사보타주, 사고, 유행병, 파업, 공장폐쇄, 태업, 노사분규, 필요한 노동력 또는 원자재 확보상의 어려움, 운송 부족 또는 실패, 플랜트 또는 중요한 기계류의 고장, 비상 개보수, 유틸리티의 고장 또는 부족, 납기지연 또는 공급업체나 하청업체가 제공한 상품의 결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이하 "불가항력"이라 함) 합당한 통제 범위 밖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의무 이행의 지연, 제한, 간섭 또는 실패 등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손해, 손실,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않는다.

11.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러한 사건의 원인 및 그것이 주문 확인서상의 의무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명시하여 서면으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도가 지연된 경우, 인도 의무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손실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기되어야 한다. 단, 불가항력 사유가 합의된 인도일로부터 60 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주문 확인서의 해당 부분을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12. 수정 및 정보; 면책조항

12.1 특정 기간 또는 제품 수량에 대해 사양이 확정된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DSM 은 통지 없이 사양 및/또는 제품의 제조물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 수시로 생산 및/또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를 대체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에 따라 고객은 DSM 카탈로그상의 데이터, 제품 데이터시트 및 기타 DSM 웹사이트상에 배포 또는 발표된 설명 공개자료(descriptive publications)가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2.2 고객은 제품 및 고객의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전문지식, 노하우 및 판단을 활용하고 이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DSM 은 DSM 이 제공한 자문으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고객은 제품 및 고객의 제품 사용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경비, 청구권, 요구 및 책임(제조물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등에 대한 DSM 의 책임을 면책한다.

13. 법과 기준의 준수

13.1 고객은 제품 사용이, (i) 뇌물방지와 부패방지, (ii) 통상 금지, 수출입 통제 및 제재 대상 등과 같은 국제 무역과 관련된 법, 법규, 규정, 기준 등의 요건 또는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이하 "법과 표준"이라 함).

13.2 고객은 본인의 피고용인과 대리인,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법과 표준의 위반이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i) 제품과 관련한 부적절한 이익을 정부 기관의 지배를 받는 법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수락,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하거나 (ii) 제품과 관련한 계약을 정부 기관의 지배를 받는 법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하는 법인이나 개인과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확약한다.

13.3 고객은 (i)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법과 표준의 준수 및 (ii)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모든 승인, 허가, 허락의 취득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4. 독립 계약자

14.1 DSM 과 고객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본 계약에 의해 발생된 관계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로 간주될 수 없다.

15. 양도 금지 및 지배권의 변경

15.1 어떤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문 확인서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양 당사자는 관계사 또는 자산 또는 제품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득하는 제 3 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15.2 주문 확인서상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주문 확인서 날짜 현재 고객을 지배하는 자와 무관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의결권 주식 등의 소유권을 통해 고객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될 경우, DSM 은 주문 확인서를 즉시 종료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은 그러한 취득 사실을 10 일 이내에 DSM 에 통보해야 한다. DSM 은 그러한 통지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러한 행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문 확인서를 종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6. 계약 정지 및 종료

16.1 고객이 DSM 에 대한 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하고 예정된 인도일 이전에 충분한 고객 이행보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객이 만기가 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상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청산하게 되거나 (개조 또는 합병의 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또는 고객이 또는 고객에 대해 파산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고객 자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수탁자 또는 재산 관리인 또는 관재인이 지명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채권자의 이익이 되도록 채무정리증서를 작성하거나 양도할 경우, DSM 은, 다른 기타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고, 서면 통지를 통하여:

(i) 미지급 된 제품의 회수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품 회수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의 계정으로 처리하며,

(ii) 고객이 제품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불보증을 DSM 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인도 예정인 제품에 대해 이행을 정지하거나 주문 확인을 종료할 수 있다.

16.2 16.1 항의 경우, DSM 의 미결제 청구액은 고객에게 인도되어 DSM 에 의해 회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만기로 간주된다.

17. 권리의 포기

17.1 DSM 이 특정 시점에 약관의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조항을 집행 또는 실시할 DSM 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DSM 의 권리는 그러한 조항 적용의 지연, 실패 또는 태만 등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18. 계약조항의 가분성 및 전환

18.1 약관의 특정 규정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규정은 계약 당사자들간의 잔존 규정의 유효성과 시행 가능성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규정은 약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관련 규정들은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최초 규정의 법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19. 소송의 제한

19.1 본 계약 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불만을 제기한 사건을 고객이 최초로 알게 된 날 후 30 일 이내에 DSM 에 대해 서면 통지하지 않는 한 주장된 클레임에 대해 고객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20. 준거법 및 재판지

20.1 주문 확인서 및/또는 약관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법규정의 상충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시행된다. 1980 년 4 월 11 일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 계약 당사자들은 일방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나 소송절차는 상소권에 대한 제한 없이 그리고 사안을 다른 관할법원에 회부할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서울의 관할법원에 제기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21. 권리의 잔존

21.1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이해 당사자들과 당사자들 각각의 후임자, 허가된 양수인, 증여,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법적 대표 등에 구속력을 갖고 효력을 발생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당사자들의 한 가지 이상의 권리와 의무의 종료가 그러한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조건의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2. 표제

22.1 본 약관에 명시된 표제는 오로지 참조 편의를 위한 것이며 구성이나 해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3. 지적 재산권

23.1 제품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DSM 의 배타적 재산권이다.

23.2 DSM 은 제품의 판매 및/또는 인도 결과 침해될 수 있는 제 3 자 지적재산권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DSM 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23.3 제품의 판매는, 암시적이든 아니든, 제품의 구성 및/또는 적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상의 라이센스를 양도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하여 또는 특정 가공 공정에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체의 위험에 대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24. 언어

24.1 본 조건의 최초 버전은 영어로 작성한다. 영문본과 번역본 간에 불일치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25. 통지

25.1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인편에 의하거나 선불의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항공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i) 인편으로 전달된 통지의 경우 전달된 당시에, (ii) 선불의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된 통지의 경우 발송 후 3 영업일 후에, (iii) 등기 또는 배달증명 항공 우편으로 해외로 송부된 통지의 경우 발송 후 7 영업일 후(통지가 도달하는 장소에서 영업일이어야 함)에 정당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5.2 각 통지는 주문 확인서에 적시된 관련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그 당사자가 이전에 발송인에게 고지한 다른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